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126호
- 나. 발 의 자 : 김소영 의원
- 다. 발의일자 : 2022년 03월 10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03월 16일

2. 제안이유

-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및 전승교육사로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상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전승교육사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5호)
- 나. 명예보유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8호)
- 다. 전수교육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9호 신설)
- 라. 명예보유자 인정에 따른 및 전승교육사 해제 사유에 대해 규정함  
(안 제20조제2항 신설)

- 마.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한 시장의 우수 이수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34조제4항 신설)
- 바. 이 조례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43조 신설)
- 사. 시장이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4조 신설)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위하여 ‘전수교육조교’의 ‘전승교육사’ 로의 명칭 변경,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규정, 전승 공헌이 있는 명예보유자의 인정 근거 마련, 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최근 주요 개정 현황 >

연번	구분	개정일(시행일)	주요내용
1	제15173호	2017. 12. 12. (2018. 6. 13.)	국가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제16056호	2018. 12. 24. (2019. 6. 25.)	전수교육조교가 전승 공헌이 있는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
3	제17404호	2020. 6. 9. (2020. 12. 10.)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로 규정
4	제18766호	2022. 1. 18. (2022. 7. 19.)	전승공동체 정의 규정 및 지원 조항 신설

### 나. 서울시 무형문화재 현황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진흥 기본계획’ (2022.02.08)에 따라 서울시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 강화와 시민 향유기반을 확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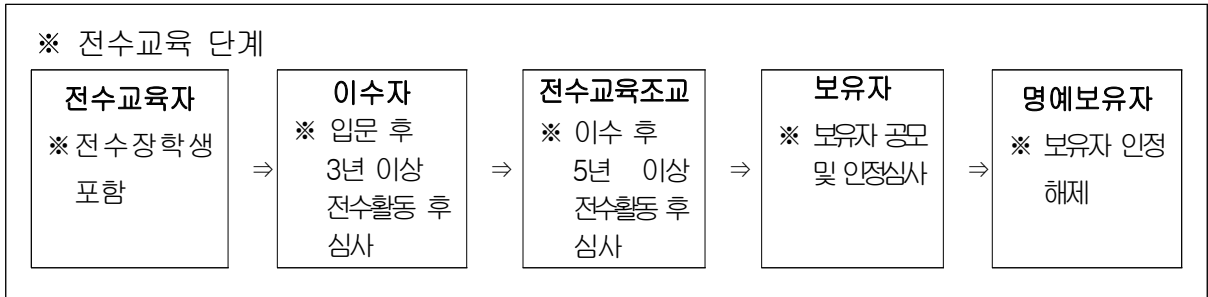
- 무형문화재 전승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단체, 기타로 구분되며, 기능(공예, 음식, 복식 등) 26종목과 예능(음악, 민속놀이, 무용, 무예 등) 26종목, 총 52개의 지정종목이 있음.
- 서울시는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무형문화재를 보존, 전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승체계를 전수교육자, 이수자, 전수교육조교, 보유자로 단계별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음.
- 무형문화재 전수자는 전수교육 단계에 따라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교육자로 나뉘며 서울시무형문화재전수자는 보유자(43명), 보유단체(14단체), 명예보유자(10명), 전수교육조교(17명), 전수장학생(56명)임.

< 서울시 무형문화재 종목 및 전승자 현황(2022. 3. 1. 기준) >

	종 목(개)				전 승 자(명)			명예 보유자	전수 장학생
	계	개인	단체	기타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합계	52	37	14	1	43	14	17	10	56
기능	26	26	-	-	16	-	5	6	12
예능	26	11	14	1	27	14	12	2	44

< 무형문화재 전수자 단계별 구분 >

- ◆ 보유자(보유단체):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단체)
- ◆ 명예보유자 : 보유자가 고령 등의 사유로 전승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 ◆ 전수교육조교 :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
- ◆ 이수자 :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기·예능을 전수받은 사람으로 실력우수자
- ◆ 전수장학생 : 전수교육자 중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다. 세부 내용

##### 1) ‘전승교육조교’ 에서 ‘전승교육사’ 로의 명칭 변경(안 제2조 등)

- 개정안은 ‘전수교육조교’ 의 명칭을 ‘전승교육사’ 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에게도 독자적인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조교들의 명예를 높여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조치임.
- ‘전수교육조교’ 는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 로 지칭하고 이러한 ‘보유자’ 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임.
- 상위법령에서 전수교육조교 명칭은 1983년 전수교육보조자로 처음 신설됐으며 2001년에 ‘전수교육조교’로 2020년에 ‘전수교육사’ 로 명칭이 개정되어 왔음.

- 무형문화재 제도의 성공여부는 전승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고 전승의 성공은 전수생을 어떻게 유치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좌우되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 전수생에 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승교육사에게도 전수교육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보유자에게만 이수자 양성과 전수교육 추천권이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2) 전승공동체 정의 및 지원 조항 신설(안 제2조, 제34조제5항 등)

- 개정안에서 ‘전승공동체’의 정의를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체득·실현할 수 있는 보유자(단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문화재를 자발적으로 실현·전승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전승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그동안 전승현장에서는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유산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전승 단절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점, ▶전통마을 등 전승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전통 지식이나 생활관습 등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음.

- 동 개정안을 통해 김치담그기, 활쏘기 등 특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전승공동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전승공동체의 의미가 모호한 만큼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임.

### 3) 전승 공헌이 있는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0조 등)

-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고려하여 예우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2001년부터 시행 중이며,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오고 있음.
- 전수교육사의 명예보유자로 인정은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수교육사가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이나 전승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함으로써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을 계승하고 인적단절을 방지한다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4) 전수교육 참여·전승활동 실적이 뛰어난 우수 이수자 지원 근거 마련 (안 제34조제4항)

- 현행 조례<sup>1)</sup>는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무형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 및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전수장학금을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이수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음.

- 이수자는 전수교육자로 입문 후 3년 이상 전수활동 후 심사를 통과한 사람으로 서울시에는 약 500명의 이수자가 있음.
- 따라서 이수활동 실적이 우수한 이수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전승지원 체계를 견고히 하고, 대중화나 수익성이 적어 전수가 취약한 종목 이수자들의 전승활동에 대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5) 전수장학생 선발 연령 기준 삭제(안 제36조)

- 현행 조례는 전수장학생 선발 연령 요건을 별표(음악·무용 18~30세, 공예 18~35세, 연극·민속놀이·제례 등 18~4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및 타 시도 조례에서는 연령기준을 삭제하였음.<sup>2)</sup>
-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연령에 상관없이 소질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전수장학생을 선발·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극심한 고령화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6조(전수장학생)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국가) 2014. 12. 30.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요건 삭제 (시도) 17개 광역지자체 중 2개(서울, 전남) 지자체만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요건을 규정



사회로 인적자원이 전환되고 있는 사회현실을 감안하고, 소질이나 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여 전통문화의 저변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6) 보유자 등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안 제43조) 및 과태료 조항 신설  
(안 제44조)

- 보유자 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무자격자를 일반인이 전승자로 오인할 가능성을 차단하여 전승질서를 확립하고 무형문화재라는 일신전속적 자격에 대한 전승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규정을 반영한 사항임.

라.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종합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법적정합성이 유효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 그리고 중국과의 무형유산 등재

경쟁 등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대내외 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면, 전승공동체 등의 개념을 통해 서울시 무형문화재의 보호범위를 현행 국가무형문화재처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지만 인정범위와 기준,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b>의안번호</b> <b>3126</b>	<b>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
----------------------------	--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소영 의원	2022. 3.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및 전승교육사로의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을 조례상 반영하는 것임</li> </ul> </li> <li>○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승교육사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5호)</li> <li>- 명예보유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8호)</li> <li>- 전수교육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9호 신설)</li> <li>- 전승공동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10호 신설)</li> <li>- 명예보유자 인정에 따른 전승교육사 해제 사유에 대해 규정함(안 제20조제2항 신설)</li> <li>- 이 조례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43조 신설)</li> <li>- 시장이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4조 신설)</li> </ul> </li> </ul>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12.24. : 법률 개정(전승 공헌 있는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li> <li>○ 2020. 6. 9. : 법률 개정(전승교육사 명칭 변경 및 전수교육 실시 주체 인정)</li> <li>○ 2022. 1.18. : 법률 개정(전승공동체 정의 규정 및 지원 조항 신설)</li> <li>○ 2022. 3.10. : 개정조례안 발의(김소영 의원 발의)</li> </ul>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수용하고자 함</li> <li>○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후속 개정 조치 필요</li> </ul>				
대응방안	○ 해당사항 없음				
상 임 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역사문화재과	팀장	신혜숙(☎2133-2612)	담당	차미래(☎2133-2617)

[참고자료 2 :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항]

구 분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전수교육 지원금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경비 및 수당</li> <li>• 지 급 일: 매월 27일 (지급기준일: 매월 20일)</li> <li>•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자: 월 137만원</li> <li>- 보유자 있는 보유단체: 월 98만원</li> <li>-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월 120만원</li> <li>- 전수교육조교: 월 60만원</li> </ul> </li> </ul>	매월 지급
전수장학금		전수장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보유자, 보유단체 추천을 받아 선정한 전수장학생에게 지원하는 비용</li> <li>• 지 급 일: 매월 27일(지급기준일: 매월 20일)</li> <li>• 지원금액: 월 21만 5천원(선정 후 최대 5년간)</li> </ul>	
특 별 지 원 금	명예보유자	명예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 급 일: 매월 27일(지급기준일: 매월 20일)</li> <li>• 지원금액: 월 110만원</li> </ul>	
	입원위로금 장례위로금	보유자, 명예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위로금: 60만원(10일 이상 입원 시, 연 1회)</li> <li>- 장례위로금: 100만원</li> </ul> </li> <li>• 지원기준: 본인 또는 가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li> </ul>	신청 필요
공개행사 지원 (연 1회 이상 의무 공개)		보유자, 보유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조례 제37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시민 대상으로 공연 및 실연(實演)하는 공개행사에 지원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종목: 전통기법 실연 및 그 작품의 전시(3일 이상)</li> <li>- 예능종목: 완창, 전 과정 등 전 과정 실연</li> </ul> </li> <li>• 최대 지원금액(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종목: 개인종목 400만원</li> <li>- 예능종목: 개인종목 600만원 / 단체종목 800만원/ 종교의례·축제성 놀이 1,000만원</li> </ul> </li> </ul>	신청 필요